

## (사) 한국재난학회 논문투고 규정

2023. 11. . 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재난학회(이하 ‘학회’)의 학회 논문편집위원회(이하 ‘편집위원회’) 규정에 따라 학회 논문집(이하 ‘논문집’)의 논문 투고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에 목적이 있다.

**제2조(투고 자격)** ① 논문집에 투고하는 논문의 제1저자 및 교신저자는 학회 정회원 또는 평생회원을 원칙으로 한다.

② 논문은 학회의 목적에 맞는 학술 논문이어야 하며, 독창성을 갖는 것으로 미발표된 것이어야 한다.

**제3조(교신저자)** 논문 제출 시 교신저자를 반드시 지정해야 하며 교신저자는 논문 원고의 투고, 수정 및 보완, 심사료 및 게재료 납부, 최종 논문 원고 및 저작권양도서 제출 등의 제반 사항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4조(논문작성)** ① 논문집에 투고하는 논문은 편집위원회에서 별도로 규정한 학회 ‘논문작성요령’ 을 준수한다.

② 심사용 논문 원고는 편집위원회에서 제공하는 심사용 논문 샘플에 맞추어 작성하여야 한다.

③ 논문의 구성은 학회 논문작성요령에서 제공하는 구성 양식을 따른다.

**제5조(논문투고 절차 및 자격)** ① 논문투고는 상시 가능하며 본 학회 이메일 또는 홈페이지에 있는 온라인 논문투고심사시스템을 활용한다.

1. 학회 홈페이지 : (<http://www.kdsbcm.or.kr>)

2. 사무국 이메일 : [kdsbcm@kdsbcm.or.kr](mailto:kdsbcm@kdsbcm.or.kr)(홈페이지 제작후)

② 논문투고자는 학회 회원이 아닐 경우, 신규 회원가입을 해야 하며 해당연도 연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③ 논문투고자는 투고 마감일까지 원고를 송고하여야 하며, 투고된 논문은 되돌려 받을 수 없다.

④ 논문투고자는 논문 투고 시 심사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게재가 결정된 후에는 소정의 게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심사료 및 게재료가 미납되면 편집위원회는 논

문게재를 거부할 수 있다.

- ⑤ 심사료와 게재료의 액수는 본 규정의 제15조에 따른다.
- ⑥ 논문은 본 논문지에 투고하기 전에 공개된 출판물에 발표되지 않았던 것을 게재하는 곳을 원칙으로 한다.
- ⑦ 논문은 수시로 접수하며, 투고 논문의 접수일은 지적소유권 확인 및 담당자가 확인한 날짜로 한다.
- ⑧ 모든 연락은 투고 신청서의 연락처(E-Mail, 주소, 전화)로 연락하며 연락처 변경 시 곧바로 학회 사무국으로 통보해야 한다.
- ⑨ 투고 규정에 어긋나는 논문은 접수하지 않는다.
- ⑩ 논문투고 시 논문투고료를 입금하여야 한다.
- ⑪ 논문게재가 확정된 경우, 논문게재료를 입금하여야 한다.

**제6조(논문접수 기준)** 투고된 논문의 접수일은 교신저자가 논문 원고를 학회 논문투고 규정에 따라 투고하고 논문심사료를 완납한 일자로 한다.

**제7조 (논문 반려)** 학회 논문투고 규정에 어긋나는 논문은 접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논문 재투고)** 학회 논문투고 규정에 따른 논문투고 절차에 따르며 재투고에 따르는 논문심사료를 납부해야 한다.

**제9조(논문반환)** 접수 또는 반려된 논문의 원고는 일절 반환하지 않는다.

**제10조(논문공개)** 접수된 논문의 원고는 논문심사를 위한 목적으로 접수일로부터 논문심사 완료 시점까지 논문심사 담당 편집위원과 위촉된 논문심사위원에 한해 공개된다.

**제11조(논문채택 및 심사 진행 간 문의)** ① 접수된 논문에 대한 게재 여부는 편집위원회 규정에 따라 결정하며, 심사위원의 명단은 공개하지 않는다.

② 투고 논문이 채택으로 판정되면 교신저자는 편집위원회에서 제공하는 게재용 논문 템플릿 및 샘플에 맞추어 작성한 최종 논문 원고를 제출해야 한다.

③ 논문심사 진행 현황에 대한 문의는 편집위원회에 할 수 있으며, ‘게재 불가’ 판정에 대한 이의 신청은 확정 판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제12조(최종 논문 원고)** ① 접수된 논문이 ‘게재 가’로 채택되면 투고자는 위원회에서 지정한 논문 양식에 맞추어 작성한 최종논문 원고를 제출해야 한다.

② ‘수정 후 재심사’ 또는 ‘수정 후 게재’ 판정의 경우 투고자는 심사자의 지적사항을 반영하고 원고를 수정하여야 한다. ‘수정 후 재심사’ 또는 ‘수정 후 게재’의 판정을 받은 경우 1개월 이내에 답변서와 수정된 원고를 제출하여야 하며, 1개월이 지나도록 답변서와 수정 원고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게재 불가’로 처리한다. 단, 기한 내에 수정이 완료되지 않을 때는 편집위원회와의 협의로 연장할 수 있다.

**제13조(저작권양도서)** 본 논문집에 게재된 논문에 대한 모든 저작권은 학회에 귀속된다. 교신저자는 모든 저자를 대표하여 위원회에서 정한 저작권양도서를 제출해야 한다. 단, ‘게재가’ 판정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저작권양도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교신저자가 해당 논문을 철회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제14조(저자 논문 점검표)** 교신저자는 모든 저자를 대표하여 위원회에서 정한 ‘논문 점검표’를 제출해야 한다. 단, ‘게재 가’ 판정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저자 ‘논문 점검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교신저자가 해당 논문을 철회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제15조(논문심사료 및 게재료)** ① 교신저자는 채택 판정된 논문이 출판(인쇄)되기 이전까지 학회가 정한 소정의 논문게재료를 위원회가 정한 바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본 학회 사무국에서 통보한 기한까지 논문게재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교신저자가 해당 논문을 철회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② 논문투고 때 본 학회에서 정한 논문심사료(일반 60,000원, 긴급 90,000원)를 납부해야 하며, 투고 논문의 반환, 철회, 채택 불가 판정 등으로 반환되지 않는다.

③ 교신저자는 최종 논문 원고를 제출하면서 본 학회에서 정한 논문게재료를 통보한 기한 내에 납부해야 한다. 규정 면수(8면) 이하에 대하여 기본 게재료 300,000원, 긴급 게재료 600,000원을 납부해야 하며, 규정 면수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 면당 일반 20,000원, 긴급 40,000원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제16조(논문철회)** 교신저자는 논문의 출판(인쇄) 이전에 국한하여 투고 논문을 철회할 수 있다. 단, 논문의 조판 중에 철회할 때 학회가 산정하는 조판 비용 및 출판 지연에 따른 모든 손해비용을 교신저자가 부담해야 한다.

**제17조(투고자 이의제기)** 논문투고자가 심사 결과에 불응할 경우, 논문투고자는

사유를 제출함으로써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1. 이의제기 시, 편집위원장은 임시 편집위원회를 소집 후 공식 안건으로 상정한다.
2. 편집위원회는 이의 제기된 심사 논문의 원문, 심사 의견, 이의제기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3. 편집위원회는 검토 후 ① 이의 기각, ② 타당성이 일부 인정될 경우, 재심사 회부, ③ 타당성이 강하게 인정될 경우, 재심사 실시 등 세 가지 사항 중 하나를 선택하고 논문투고자에게 이를 공지한다.
4. ③의 결정 시 심사위원을 새로 구성하여 원점에서 재심사하며,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의 의견을 참조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심사위원을 재구성할 수 있다.

**제18조(논문 저자 변경)** 논문저자명의 추가, 삭제, 저자명 순서에 대한 변경은 해당 논문이 출판(인쇄)되기 이전까지 가능하다. 단, 교신저자는 추가 또는 삭제되는 저자를 포함하는 모든 저자의 자필서명이 포함된 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19조(논문게재 순서)** 논문게재 순서는 다음과 같다.

- ① 채택으로 판정된 논문은 ‘최종 논문 원고’와 ‘저작권양도서’가 모두 제출된 일자의 순서로 게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편집위원장 또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게재 순서가 조정될 수 있다.
- ② ‘저작권양도서’의 제출 또는 논문게재료의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 논문의 게재가 지연될 수 있다.

**제20조(논문 별쇄본)** 교신저자가 별쇄본을 요청할 때는 위원회가 정한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제공할 수 있다.

**제21조(책임과 윤리)** 투고 및 게재된 논문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저자에게 있으며, 저자는 학회의 연구윤리규정을 준수할 책임이 있다.

## 부 칙

**제1조(시행)** 이 규정은 제정일로부터 시행한다.